

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0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7. 12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 단서에 따르면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,
- 나. 우리 군 조례에서는 상위법령(영유아보육법)의 위임 없이 같은 수탁자에게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탁 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에 따라, 위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에 대한 의무부과 및 위법성을 해소하고 영유아 보육 위탁사업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」 제22조 삭제

제22조(위탁의 제한) 군수는 같은 수탁자에게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1) 입법예고(2017.10.20. ~ 11.0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(기획감사실-12986)

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(기획감사실-12924)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 없음(주민생활지원과-62733)

5) 조례·규칙심의회 : 원안의결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22조(위탁의 제한) 군수는 같은</u> <u>수탁자에게 2개소 이상의 어린</u> <u>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.</u>	<u><삭 제></u>

관계법령 발췌

□ 영유아보육법

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 ①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., 2010.1.18., 2011.6.7.>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. <개정 2008.1.17., 2011.6.7., 2011.8.4.>

1.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한 자
2.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
3. 「주택법」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한 자

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1.6.7.>

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2.29., 2010.1.18., 2011.6.7., 2011.8.4.>

[전문개정 2007.10.17.]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의안의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
연락처	(033) 330 - 2309